

# 농림부의 농업·농촌 종합대책(낙농분야) 주요쟁점사안

— 협 회 —

농림부는 농업·농촌 종합대책('04. 2. 23)에서 낙농분야 대책으로 원유수급 및 가격결정의 시장기능 강화와 원유가격결정시스템 개선에 대한 내용을 발표하였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원유수급 안정을 위해 유업체가 자율적으로 생산조절토록 유도하기 위해 낙농진흥회의 원유집유 체제를 낙농가와 유업체 직결체제로 전환하고, 낙농진흥회는 기능개편 하거나 해산한다고 명시하였다. 또한, 원유가격은 생산자와 유업체가 자율협의하여 결정하는 구조로 개편하고 체세포·세균수 등급간 가격차를 확대하여 유질 개선 및 유지방 등급간 가격차를 축소하여 생산비 절감을 도모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논점은 원유집유 체제를 낙농가와 유업체 직결체제로 전환하는 문제이다.

직결체제 전환의 경우 두가지 방안을 유추할 수 있다. 첫째로, 유업체와 낙농가가 직접 계약하는 방안이다. 이 경우 낙농가는 거래교섭력이 매우 약화되어 유업체의 횡포에 휘둘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정부는 사전에 유업체와의 협의과정을 거쳐야 하고 상당부분은 유업체가 원하는 방식으로 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진다. 둘째로, 낙농가들을 집유조합을 통해 집유조합이 거래교섭력을 갖고 유업체와 계약하는 방안이다. 이 경우 유업체는 자기들 입맛에 맞는 농가들만 별도로 선별하여 직접 계약하는 방향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집유조합의 거래교섭력은 그 역할이 매우 축소될 뿐만 아니라 중소, 영세규모의 농가들만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에 처해질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그러므로 직결체제 전환 이전에 농가의 안정장치 방안마련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검사공영화 만큼은 반드시 제도화하여 농가의 또 다른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더군다나 금번 농림부의 농업·농촌 종합대책에서 밝힌 직결체제 개편과 함께 원유가격을 생산자와 유업체가 자율적으로 협의하여 결정하는 구조로 개편하는 것은 매우 우려할 만한 사항으로 중장기적인 낙농산업의 지표설정과는 동떨어져 있다고 보여진다.

이에 주요 발췌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 원유가격결정시스템 개선

(①, ③기본계획 중 발체)

### 원유수급 및 가격 결정의 시장기능 강화

- 원유 수급안정을 위해 유업체가 자율적으로 생산 조절토록 유도
  - 낙농진흥회의 원유 집유 체제를 낙농가와 유업체 직결 체제로 전환
  - 낙농진흥회는 낙농정보 수집·제공, 우유소비홍보 등의 기능으로 개편하거나 해산
- 원유가격은 생산자(또는 조직)와 유업체가 자율 협의하여 결정하는 구조로 개편
  - \* 현재는 생산자와 유업체 대표가 참여하는 낙농진흥회 이사회에서 원유가격을 결정하고, 일 반 유업체는 이를 준용

## 축종별 경쟁력 제고

(③품목별 대책 중 발체)

- ◇ 집유 및 가격결정체제 개편, 소비 홍보 등으로 우유 수급을 안정
- ◇ 체세포 등 하위등급 원유에 대한 패널티 강화로 원유 품질 향상

(절소)

- ◇ 생산·유통·소비 구조개편을 통해 우유수급 안정 도모
- ◇ 젖소 사육환경 및 원유의 품질·위생 개선

- 집유 및 원유가격 결정체제를 개편하여 수급안정 도모
  - 원유 집유 체제를 유업체·낙농가 직결체제로 전환
  - 원유가격도 생산자와 유업체가 자율 협의·결정토록 개편
- 우유 소비 홍보, 유제품 개발 등을 통해 우유 소비 확대
  - TV매체를 통한 홍보, 우유의 우수성 교과서 반영, 자조활동자금 활성화 등으로 어릴 때부터 우유먹는 습관 형성 및 시유 소비기반 확대
  - 치즈 등 국산유제품 개발로 시유중심의 소비패턴을 유제품으로 확대
- 원유의 품질·위생수준 향상으로 소비자 신뢰 확보
  - 체세포·세균수·유지방 등 원유가격산정체제 개선
  - 깨끗한 목장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여 목장 위생·환경 개선

- **젓소개량,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등으로 생산성 향상**
  - 산유능력 검정 등 젓소개량과 양질의 조사료 급여 확대 등으로 산유량 제고 및 경제수명 연장
  - 경종농가와 연계하여 총체보리 등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 원유가격결정시스템 개선

(②세부추진 계획 중 발체)

- **원유가격은 생산자(또는 조직)와 유업체가 자율 협의하여 결정하는 구조로 개편**
  - 원유집유 체계를 낙농가와 유업체 직결체제로 전환 추진
- **체세포·세균수·유지방 등 원유가격 산정체계 개선**
  - 체세포·세균수 등급간 가격차를 확대하여 유질을 개선하고, 유지방 등급간 가격차를 축소하여 생산비 절감 도모

구분	1단계('04)	2단계('05~'08)	3단계('09~)
원유가격 결정시스템 개선	원유가격 결정 시스템 개선 검토	체세포·세균수·유지방 등 원유가격 산정 체계 개선	

## 축산업 등록제

(②세부추진 계획 중 발체)

- 종축업, 부화업, 계란집하업 및 일정규모 이상 가축사육업영위자는 법 시행후 2년이내('05. 12. 26)에 시장·군수에게 등록
  - 등록대상 농가범위는 축종별 전업화 정도, 분뇨발생량, 질병 발생·전파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설정(총 31천호)

구분	한육우	젓소	돼지	닭
등록농가 규모	300㎡(30두)	300㎡(30두)	50㎡(50두)	300㎡(3천수)
농가수(비율)	9천호(4.3%)	8(71)	10(59)	3.6(2)
사육두수비율	44%	89	99	98

- 등록후 가축 사육밀도 유지, 친환경축산 교육이수 등 준수
  - ※ 미등록시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벌금 부과, 준수사항 미이행시 500만원이하 과태료 부과

〈추진일정〉

추진전략	1단계('04)	2단계('05~'08)	3단계('09~)
위생·방역 강화 및 환경친화적 축산업 육성	부화업·종축업, 계란집하업 등록완료	기존 가축사육업 등록완료	

**협회 활동 방안**

**1. 원유생산비 조서 대응 방안**

- 농관원의 원유생산비조서가 원유가 인하 근거자료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고 이에 표본농가를 계속해서 파악중에 있음
- 농가 가장작성의 교육과 함께 생산비조서 적용의 문제를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으나, 반영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 자가노임 부분 : 목부노임과 동일하게 적용되어 낮게 책정되어 있음 ; 일본의 경우 일반 산업체의 평균임금을 적용하여 현실화시킴
  - 노동시간 부분 : 생산조서의 축협중앙회에서 농관원으로 이관시 대폭 줄어듬('97: 208.7시간/두당, '02: 94.27시간/두당)
  - 건물, 대농기구의 잔존가액율을 5% 적용하여왔으나, 협회의 건의로 0% 적용됨
- 협회 소식지 발간 등을 통해 농가 지도 및 지속적인 건의활동 병행

**2. 낙농진흥회 문제 대응활동 방안**

- 기준원유량 상향조정 문제 및 유대정산 방법 문제
  - 당초 농가대표 감축대책 협의시 계절별 지수를 인정하여 연평균 생산증감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나, 현재는 감축목표를 달성하였다 하더라도 농가가 불이익을 받게되는 등 협의내용과 다르게 적용되고 있음
  - 그 동안 협회에서는 수차례에 걸쳐 농림부 방문, 공문발송 등을 통해 당초 농림부 협상결과대로 이행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개선되지 않고 있음
  - 또한, 일반 유업체가 우유수급 상황의 호전으로 기준원유량(쿼터)을 인상하고 있는 상황이고, 진흥회 계약물량이 인상되었으므로 낙농가의 기준원유량을 인상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함
  - 협회 추천의 낙농진흥회 이사와 농협추천의 집유조합장 이사와 연대하여 낙농진흥회 이사회 소집요구, 진흥회 이사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강구가 필요함
    - 진흥회 이사회 소집요구 : 이사 5인 이상, 감사2인 이상
    - 농림부 방문 등 활동 재개
  - 진흥회 문제는 협회로 창구를 일원화하여 농림부와 협상 등 활동 모색

□ **낙농진흥회연합회의 건의내용(2. 6)**

- 1) 기준납유량을 기준년도 평균납유량으로 하고, 비퍼물량과 원충물량은 현행대로 적용
- 2) 신규농가는 첫납유를 시점으로 6개월, 납유시작 6개월후 중 농가가 유리한 기간으로 선택 6개월평균 납유량으로 재조정
- 3) 영세농가의 경우 매매시에는 현기준량만을 인정하되, 납유시에는 최소 생계비를 보장 (최소 400리터보장)
- 4) 계절별 생산지수 적용은 당초 합의대로 이행
- 5) 시설투자에 대한 생산성 보장

□ **농협 폐업지원금 지급 문제**

- 당초 정부의 폐업지원금 10만원/1에 추가하여 농협중앙회에서 3만원 수준을 지급키로 농림부에서 발표(2003. 5. 29)하였으나, 현재 1만원 수준만 지급되고 있음
- 협회에서는 수차례에 걸쳐 농협중앙회에서 확보한 1,300억원의 저리자금 지원기간을 연장하는 방안 등을 마련하여 약속한 3만원 수준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반영되지 않고 있음
- 폐업농가 대표단이 농림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등에 이의제기와 대책마련을 요구중임

### 3. 낙농산업발전대책협의회 활동방안

□ **소위원회 활동**

- 제1호 안건에서 구성된 소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 및 대응활동
  - 농림부『낙농산업발전대책협의회』활동 방안
  - 지난 2월 23일 발표한『농업·농촌 종합대책』대응방안
    - ; 전국낙농관련조합협의회 건의문(3. 12 축산신문 광고)

- DDA/FTA 타결이후 국내 낙농업에 대한 명확한 정책목표(예:우유자급율)가 제시되어야 한다.
- 원유집유체계를 개편할 경우 반드시 집유업무에 대하여 생산자 단체인 낙농관련 조합이 집유를 전담하고 조합별 쿼터관리권을 보장하여 낙농조합원의 권익이 보장되어야 한다.
- 본 대책안의 시행 이전에 반드시 낙농관련 조합과 협의를 토해 조합 및 조합원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정부의 원유자급율 목표 설정과 정책 지원 방안
- 낙농경영안정대책 방안
  - ; 생산성 향상 방안 마련, 조사료 수입 자유화, 축산업 등록제 유예 등

- 우유소비 확대 방안
  - ; 시유소비 확대 기반 조성 및 유제품 시장 형성, 유제품에 대한 자조금 거출로 수입역제 대책 마련, 학교급식 확대 · 군급식 용량 확대 등 단체급식 확대 등
- 기타
- 소위원회 결과에 대해서는 임원에 통보하고, 필요시 이사회 개최

#### 4. 축산업 등록제 대응활동

##### □ 축산법 개정 활동

- 지난 제6회 이사회(2003. 12. 16~17)에서 지역별로 축산법 개정을 위한 지역구 국회의원 방문 · 청원활동을 전개키로 결의한 바 있음
  - 축산법 개정 연대서명은 6,633여명이 하였으나, 국회의원 방문활동은 미미한 실정임

〈축산법 재개정 연대서명 결과 (2004. 3. 5 현재)〉

지 역	서명인수	지 역	서명인수
경 기	4,823	강 원	122
충 북	196	충 남	416
전 북	105	전 남	214
경 북	459	경 남	579
제주 · 기타	53	총 계	6,967

- 임원, 도(연합)지회장이 나서서 지역 국회의원 및 입후보자의 서명운동 전개 (서명부 붙임)

##### □ 대안마련 활동

- 현재 축산업등록에 필요한 시설 · 장비 등을 갖추는데 필요한 자금 지원되고 있음
  - 축산업등록시 필요한 시설이나 장비를 갖추는데 소요되는 비용 80% 용자 지원
    - ; 호당 5,000만원 이내, 3년거치 7년상환, 연리 3%
- 축산법 개정 활동과 동시에 축산업등록제 시행에 대한 대안마련 활동 병행 추진
  - 요구사항(안)
    - ; 보조지원 및 용자지원 상환기간 연장 및 금리 인하
    - ; 퇴비 생산농가 및 소비 농가에 행정적인 연계조치 마련
    - ; 공동분뇨 처리장 및 세척 액비조 처리장 설치 지원